

1.

정답 ④

해설 [○]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(불가변력)이 발생하게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소추하지 못한다.

①:[×]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고처분 자체는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.

②:[×]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(대판 2007. 5. 11, 2006도1993).

③:[×]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처리된다.

2.

정답 ②

해설 [×] 행정처분에 불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(대판 2009. 6. 25, 2006다18174).

3.

정답 ①

해설 [×] 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정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 : “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(대판 2001. 3. 18, 2001두8254 전합 다수의견).”

4.

정답 ④

해설 [×]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에 해당한다(대판 2011. 1. 20, 2010두14954).

5.

정답 ③

해설 [×]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‘행정심판청구서’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,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처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(대판 2012. 3. 29, 2011두26886).

6.

정답 ②

해설 [×]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(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).

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7.

정답 ④

해설 적법한 권한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행한 관세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(대판 2004. 11. 26, 2003두2403).

8.

정답 ②

해설 ㄱ.ㄴ.ㄷ.ㄹ.은 처분성이 긍정된 사례, ㄴ.ㄹ.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부정된 판례이다.

ㄱ:[○]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다(대판 2002.4.26, 2001두8155).

ㄴ:[×]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(대판 2008. 1. 31, 2005두8269).

ㄷ:[○]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(대판 1992. 12. 8, 92누7542).

ㄹ:[×]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(대판 2002.5.17, 2001두10578).

ㄹ:[○]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(대판 2007. 10. 11, 2007두1316).

ㅂ:[○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(2013. 1. 16, 2010두22856).

ㅅ:[×]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정력,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(대판 1995. 1. 20, 94누6529).

9.

정답 ②

해설 [×]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 : “구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(1998. 9. 19. 법률 제5571호로 폐지)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,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,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근거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(대판 2002. 6. 28, 2001다60873).”

10.

정답 ④

해설 [×]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일간신문의 게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.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참조.

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(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)

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.

①:[○] 법령과 조례·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 다만,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 등은 공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.

②:[○]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.

③:[○]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※ 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1.

정답 ③

해설 [×]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. **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(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)** 제2항.

12.

정답 ①

해설 [×]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(대판 2002. 11. 26, 2002두5948).

13.

정답 ③

해설 [×]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(대판 2003. 11. 28, 2003두674).

14.

정답 ①

해설 [○]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은 이른바 공공계약으로서 사법관계에 해당하고, 사법상 의무에는 행정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 대판 2006. 10.13, 2006두7096 판결 등 참조.

②:[×]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작위의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: “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경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(대판 1996. 6. 28, 96누4374).”

③:[×] 대집행요건에 대한 판단은 공익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, 그것이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의 일탈·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(대판 1967. 11. 28, 67누139).

④:[×] 철거의무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계고 처분 이후 반복되는 계고는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: “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행한 제2차·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판 1994. 10. 28, 94누5144).”

15.

정답 ④

해설 [×]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재결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: “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제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,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(대판 2001. 7. 27, 99두2970).”

16.

정답 ①

해설 [×] ...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.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2항 참조.

제8조(조사대상의 선정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, 법령준수의 실적,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,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:[○]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.

제22조(조사원 교체신청)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.

③:[○] 동법 제28조.

제28조(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④:[○] 동법 제5조.

제5조(행정조사의 근거)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7.

정답 ①

해설 [○] 공무원의 차량사고로 인하여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운행자성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성

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. 즉, 손해배상책임을 성립 여부는 자배법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루어진다.

제2조 (배상책임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:[×]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 아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 제2항 참조.

제55조(소송허가요건 등)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.

③:[×] 행정심판 관련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 행정심판법 제10조 제7항 참조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⑦ 사건의 심리·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:[×]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,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. 단,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는 있다.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참조.

제78조(이주대책의 수립 등)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(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)에 대한 도로, 급수시설, 배수시설,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8.

정답 ④

해설 내부위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지만, 피고는 무권한의 행위를 한 처분명의자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고적격자는 적법한 권한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, 내부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행한 종로경찰서장이다. : “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

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이 아닌 실제로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이 단(대판 1991. 2. 22, 90누5641).”

19.

정답 ③

해설 [×]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정보이다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참조.

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6.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
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
20.

정답 ②

해설 [×] 위임받은 사항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와 방법에 어긋난 경우에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입법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. : “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,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(대판 2012. 7. 5, 2010다72076).”